

수원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19가단5650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4. 6.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6.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22,514,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1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 피고, C는 2012. 1.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 3. 29. 남양주시 D리(이하 'D리'라 한다) E 답 2,073㎡(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와 F 답 1,683㎡(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에 관해 각 1/3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 피고, C는 2013. 10. 1. G조합(이하 'G'이라 한다)과 분할 전 E 토지와 분할 전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 채무자를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에 따라 B는 2013. 10. 4.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3. 5.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기보'는 원고를, '본인'은 소외 회사를 각 의미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해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 신용보증의 부탁

①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보에게 신용보증을 부탁드립니다.

신용보증원금: 9,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5. 3. 5.

제10조 상환범위

①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보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라.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14.

3. 5. 중소기업은행에 보증금액을 9,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5. 3. 5.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이하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보증하였다. 그 후 위 보증금액은 8,500만 원으로, 위 보증기한은 2020. 2. 28.로 각 변경되었다.

마. B, 피고, C는 2014. 9. 29. G와 분할 전 E 토지와 분할 전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600만 원, 채무자를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바. 2015. 5. 20. ① 분할 전 E 토지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와 I 답 59㎡(이하 'I 토지'라 한다)로, ② 분할 전 F 토지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 토지'라 한다)와 J 답 124㎡(이하 'J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사. 위와 같은 각 토지분할에 따라 제1, 2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가 제1, 2 각 토지 및 I 토지와 J 토지로 되었는데, 2017. 10. 17.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I 토지와 J 토지에 관한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져 제1, 2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가 제1, 2 각 토지로 변경되었다.

아.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8. 4. 24.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1억 5,6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B는 2018. 4. 26. G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자. B는 2019. 6. 19. 피고에게 제1, 2 각 토지 중 자신이 소유한 각 1/3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9. 6.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차. 원고는 2019. 10. 29. 중소기업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 중 86,319,335원(= 원금

8,500만 원 + 이자 1,319,3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카. 제1, 2 각 토지의 시가 합계액은 ① 2019. 6. 19. 기준으로 793,206,000원(= 제1 토지 447,108,000원 + 제2 토지 346,098,000원)이고, ② 2020. 10. 26. 기준으로 907,542,000원(= 제1 토지 511,556,000원 + 제2 토지 395,986,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K 경기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22,514,000원[=(907,542,000원 × 1/3) - 2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22,51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2) 살피건대, 어떤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B이 소유한 제1, 2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의 시가와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액수를 산정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6. 19.을 기준으로 한 제1, 2 각 토지의 시가 합계액이 793,206,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제1, 2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의 시가 합계액은 264,402,000원($= 793,206,000\text{원} \times 1/3$)이 된다.

한편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9. 6. 19.을 기준으로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 1억 5,000만 원과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 1억 3,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인 피고와 C가 채무자인 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제1, 2 각 토지 중 B이 소유한 각 1/3 지분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인 2억 8,000만 원($= 1\text{억 } 5,000\text{만 원} + 1\text{억 } 3,000\text{만 원}$)이 된다.

3) 따라서 위 피담보채권액이 제1, 2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의 시가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지창구

목 록

1. 남양주시 E 답 2014m'
2. 남양주시 F 답 1559m', 끝.